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9

발의연월일: 2020. 6. 11.

발 의 자:태영호·김기현·송언석

강기윤 · 김정재 · 김희곤

임이자 • 허은아 • 이주화

서범수 · 이 용 · 조경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장에서 판매되는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경범죄로 규율되어 단속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고령자 등은 이러한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 등으로 인해 공연 표가 조기 매진됨에 따라 해당 공연에 대한 구매 기회를 얻기 힘든 실정임.

이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 입장권·관람권 등(이하 "공연 입장권등")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연 입장권등의 현장 판매 의무 비율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43조제2

항제1호ㆍ제1호의2 신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공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 입장권·관람권 등(이하 "공연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로부터 매입한 공연 입장권등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3(공연장 등 현장 판매 의무) ① 공연 입장권등을 발행할 권한 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공연 입장권등에 대한 발행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공연장 등 현장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공연 입장권등의 현장 판매 절차 및 시설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2를 위반하여 공연 입장권등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

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1의2. 제7조의3에 따른 공연 입장권등의 현장 판매 의무 비율을 위 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 판매 의무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공연 입장권등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가 공연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7조의2(공연 입장권등의 부정
	판매 금지) 누구든지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공연 입장권
	•관람권 등(이하 "공연 입장
	권등"이라 한다)을 발행할 권
	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로부터 매입한
	공연 입장권등을 자신이 매입
	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
	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u>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u>
<신 설>	제7조의3(공연장 등 현장 판매
	의무) ① 공연 입장권등을 발
	행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
	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공연 입장권등에 대한 발행 총
	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공연장 등 현장에서 판
	매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공연 입장권등의

제43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u>1.</u> (생 략)

<u>1의2.</u> (생 략)

2. ~ 4. (생략)

③ ~ ⑤ (생 략)

 현장 판매 절차 및 시설의 범

 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2 -----
- _____
- -----.
- 1. 제7조의2를 위반하여 공연 입장권등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 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 를 알선한 자
- 1의2. 제7조의3에 따른 공연 입장권등의 현장 판매 의무 비율을 위반한 자
- 1의3. (현행 제1호와 같음)
- 1의4.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 2. ~ 4.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